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7. 18 선고 2023가단1081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3. 6. 27.

판 결 선 고 2023. 7. 18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3. 21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22. 3. 21. 접수 제30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B는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.

(단위: 원)

세목	귀속	고지일	납부기한	고지세액	체납액 (가산금포함)	납세의무 성립일
양도소득세	2022	2022.5.10.	2022.5.31.	79,587,990	86,483,660	2022.1.31.
양도소득세	2022	2022.7.11.	2022.7.31.	76,217,890	81,642,280	2022.1.31.
합 계					168,125,940	

나. B는 2022. 3. 21. 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,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22. 3. 21. 접수 제30105호)를 마쳐주었다.

다.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4,500만 원 정도였고, 소극재산은 국세채무 1억 5,500만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~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해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나.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 등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,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왕현

별 지 목 록
(부동산의 표시)

1. 울산광역시 울주군 임야 397㎡
2. 울산광역시 울주군 묘지 317㎡

